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은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607

발의연월일: 2024. 8. 7.

발 의 자:김은혜・박정하・신동욱

김장겸 • 서범수 • 권선동

송석준 • 이성권 • 조지연

송언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조세, 부담금, 건강보험료 등 각종 금전적 부담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동산공시가격을 시세에 맞게 현실화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, 부동산공시가격 결정·공시 시 해당 계획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위와 같은 부동산공시가격의 현실화 제도는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함으로써 법률이 아닌 방식으로 조세 등을 간접적으로 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최근과 같이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는 경우에 는 부동산공시가격의 과도한 상승으로 국민들의 조세 등 금전적 부담 을 가중시키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의 이점보다 부 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부동산공시가격의 현실화 제도를 폐지하되, 중앙부동산가격공

시위원회 심의 시 조세·부담금 등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세·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24조제7항 신설 및 제26조의2 삭제등).

법률 제 호

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1항제17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7항)중 "제6항"을 "제7항"으로 한다.

-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한다. 다만, 제1항제1호·제2호·제5호·제8호·제11호·제14호·제18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. 부동산공시가격이 조세 · 부담금 등에 미치는 영향
- 2. 조세·부담금 등의 형평성

제26조제2항 중 "시세 반영률, 조사"를 "조사"로 한다. 제26조의2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) 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

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(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	제24조(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
회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	ಶ) ①
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	
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	
시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위	
원회"라 한다)를 둔다.	
1. ~ 16. (생 략)	1. ~ 16. (현행과 같음)
17. 제26조의2에 따른 계획 수	<u><삭 제></u>
립에 관한 사항	
18. (생 략)	18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
	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
	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제1
	호·제2호·제5호·제8호·제1
	1호・제14호・제18호의 사항을
	심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
	아니하다.
	1. 부동산공시가격이 조세ㆍ부
	담금 등에 미치는 영향
	2. 조세·부담금 등의 형평성
<u>⑦</u> 제1항부터 <u>제6항</u> 까지에서	<u>⑧</u> <u>제7형</u>
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	

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26조(공시보고서의 제출 등) ① 7 (생 략)
 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,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,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,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, 조사·평가 및 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
- 제26조의2(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)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 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 형·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시 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 고,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26조(공시보고서의 제출 등) ①
(현행과 같음)
②
<u>조사</u>
,
<u><삭 제></u>

-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부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, 지역 간의 형평성, 해당 부동산의 특수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한다.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 쳐 공청회를 실시하고, 제24조 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④ 국토교통부장관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공시가격 을 결정·공시하는 경우 제1항 에 따른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 여야 한다.